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4년 9월 일 (제 회)

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일

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일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35조 규정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‘인구 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- 나. 동 위원회는 충청북도 저출생·고령화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및 쟁점 논의를 통하여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.
- 다. 인구소멸대응 대책 추진 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추진제도 개선, 인구교육 강화, 인구정책 대응 지역사회 기반 조성, 인구 감소지역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.
- 라.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되, 필요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마.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20년 5,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, 2024년 합계출산율*도 0.72명으로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함.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최하위로,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임.

*합계출산율 :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

나.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(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, 옥천, 제천)가 행안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,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.

다. 인구감소는 곧 지역성장 잠재력 저하 및 지역소멸을 초래하므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.

라. 또한, 각 시·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구정책 대응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(일자리, 경제, 의료, 보육, 주거 등)의 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.

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제2항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35조, 제38조, 제39조

참 고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제35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3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- 제39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)**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.
-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.
-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다.
-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.
-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